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1. 6.

제 출 자 : 구미시장

1. 개정사유

- 현재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업무 기능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을 추가하여 공단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 금후 체육, 복지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현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하기위해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칭변경 :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 → 구미시시설관리공단

나. 이사수(제9조) : 8인이내(이사장 포함) → 9인이내(증원 1인)

- 상임이사(1인) → 상임이사(0)
- 당연직이사(3인) → 당연직이사(4인)
기획정보실장, 경제진흥국장 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건설국장
- 기타 전문인 (3인) → 4인(체육분야 1인)

다. 사업범위 추가(제25조)

-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의 수탁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라. 부칙조항 신설(경과조치)

- 임직원 승계,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지방공기업법제76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미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설 치 조 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공단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체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유고시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는 시 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국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공단 업무의 전문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
7. 공직(조합장, 새마을금고이사장 포함)선거에 입후보 등록중인 자나 정당의 간부급 이상인 자

제12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때 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겸직 허가) 공단의 임직원이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겸직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 하고자 하는 자의 직위(급) 및 성명
2. 겸직 하고자 하는 직무의 명칭과 내용
3. 겸직의 기간 집무장소와 그 방법
4. 공단과 겸직 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관련 여부
5. 보수의 유무와 그 금액

제15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⑤이사회 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이사회 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의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3 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시장은 법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시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공단의 감사 1인

②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19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3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단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2인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 추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 업

제2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의 수탁관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5.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공단이 제25조에 규정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이하 “영”이라 한다)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공단금고에 당일 불입하여야 한다.

제27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재 무 회 계

제28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1조(결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영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6조(수입금) 공단의 수입금은 시에서의 전입금으로 한다.

제37조(재정지원) 시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8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이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0조(자금운영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 및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선수금)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42조(공단채발행 및 차관) 시장은 공단이사장의 공단채발행 및 외국차관도입 요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발행 및 차관 도입을 승인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43조(차입)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 할 수 있다.

제 6 장 감 독

제44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각종수당,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4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시장은 공단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소속직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업무를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보수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임·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 및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 및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